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가합501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1.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형탁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A과 D 사이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는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0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0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0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76. 5. 24. 설립되어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특수법인이고, D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A은 2021. 4. 12.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1244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 A의 파산관재인 B(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A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03. 10. 1. 설립되어 부동산의 신탁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D의 건물 건축행위

1) D은 2015. 4. 17. G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조합과 사이에 삼척시 H, I, J, K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G조합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이하 ‘삼척등기소’라 한다) 2015. 4. 17. 접수 제4169호로 근정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5. 12. 22. G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던주택 신축사업 기성고대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2. 28.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한도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을 받았다.

모던주택 신축사업 기성고대출 업무협약서

제6조(근저당권 설정 및 담보신탁)

D은 L에 D 및 시공사의 우발채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의무)

① D 및 시공사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가 이행될 경우, G조합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G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D이 G조합에 대한 토지대금 및 기성고대출 원리금을 완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D은 G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주택건설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다.

다.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19. E와 사이에 E가 중소기업은행 남원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그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1,128,8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2. 8.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이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2)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을 1,062,4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3. 28.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내용은 중소기업은행 남원주지점장에게 통지되었다.

라. D의 이 사건 제3, 4 토지 처분

- 1) D은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배우자였던 M에게 삼척등기소 2018. 1. 29. 접수 제1031호로 2017. 4.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M은 N,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3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D은 M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2, 4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다(삼척등기소 2017. 11. 30. 접수 제14788호).
- 3) D은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위 M에게 삼척등기소 2018. 8. 1. 접수 제10612호로 2018.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의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처분

1) D은 2018. 7. 11.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1 건물,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각 775,000,000원 합계 1,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8. 7. 2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G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 N, O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24. G조합과 사이에 1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삼척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0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삼척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02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삼척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10274호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대위변제

E는 2018. 10.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3. 13. E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083,719,16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3,866,34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E가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기 3개월 전인 2018. 7.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A과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주위적으로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한다.

3. 피고 파산관재인이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의 본안전 항변

E는 2018. 10.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는 부실관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채무관계인의 재산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2018. 10. 24.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그 때로부터 1년 2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8. 7. 24. 삼척등기소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점, ② 원고는 2019. 3. 29.경 이 사건 각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한 점, ③ 원고가

실제로 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2019. 3. 1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0. 24.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 7.로부터 1년 전인 2019. 1. 7.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D과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②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7. 11.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8. 10. 24. E는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9. 3. 11. E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083,719,1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약 6개월 만에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③ E는 2017. 10.경부터 사용자로서 직원들을 위하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8. 8.경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각 부담금과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D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의 합계액이 1,651,219,000원,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3,935,32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삼척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D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A이 D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거나 A이 E 또는 D과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의 어머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P부동산'이 인쇄되어 있는 용지에 작성된 계약서로 체결되었다.

③ A은 G조합으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G조합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매매대금 중 11억 2,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④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전부를 D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D은 A을 상대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1170)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⑤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5억 5,0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조합으로부터 합계 9억 3,000만 원(토지담보 대출 1억 5,000만 원 + 기성대출 7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G조합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을나 제5호증 제6조 제1항),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D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A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는 A이 G조합으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산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참조), 한편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이 경우 전득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전득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탁법 제8조 제1항).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인 G조합은 D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비 7억 8,000만 원을 기성고에 따라 대여한 점, ② G조합은 D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G조합은 2015. 12.부터 2016. 8.까지 D에게 공사비를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2016. 3. 19. 전에 D에게 이미 6억 3,460만 원을 대여한 점, ④ G조합은 A과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기존 D에 대한 대출금 9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으면서 A에게 새로운 자금을 대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조합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체결된 D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G조합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된 A이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통하여 수익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수익자인 G조합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수탁자인 피고 C을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D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A, G조합의 선의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상회복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박상인, 판사 김태진

(별지1)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R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2.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S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3.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T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4.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U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5.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V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6.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W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7.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X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8.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Y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9.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Z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0.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A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1.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B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2.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C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3.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D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4.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H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Q]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E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H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별지2)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G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2.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H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3.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I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4.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J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5.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K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1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6.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1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L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1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7.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1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M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1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8.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1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N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9.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O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0.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P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1.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Q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2.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R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I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3.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I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S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1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14.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1

[도로명주소 : 강원도 삼척시 AF]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105.91㎡

2내지4층 183.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AT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38.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강원도 삼척시 1 대 660㎡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4분의 1

